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외 추진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시행령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금융환경의 악화, PF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투자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한편,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예산상 제약으로 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공사 지연,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를 선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을 7개 추가(안 제18조의3 신설)

- 1)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부대사업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안 제29조제2항제1호)

- 1)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 조달비용, 관련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부대사업의 시행) 법 제21조제1항 제1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사업
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 개발사업 및 도심항공교통사업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사업

제29조제2항제1호 중 “1조원”을 “2조원”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보상자금 선투입) ① 보상 지연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예

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우선 투입하는 것을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보상자금을 선투입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원금 및 조달비용을 지급하며, 선투입 금액, 원금 및 조달비용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상자금 선투입에 따른 조달비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기간, 금리 변동 여부, 금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조달하는 금리를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보상자금 선투입 사업에 대한 선투입 규모, 상환기간, 연도별 상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8조의3(부대사업의 시행) 법 제21조제1항 제18호에 따른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 시설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사업 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버티포트개발사업 및 도심 항공교통사업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 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시설사업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생략)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
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
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
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
증의 경우: 1조원

2. (생략)

<신설>

② -----

-----.

1. -----
----- 2조원

2.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보상자금 선투입) ①
보상 지연으로 지가 상승이 예
상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
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주무관
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우선
투입하는 것을 보상자금 선투입
이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
1항에 따라 보상자금을 선투입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원
금 및 조달비용을 지급하며, 선
투입 금액, 원금 및 조달비용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상자금 선투입에 따른 조

달비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
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
과 협의하여 대출기간, 금리 변
동 여부, 금융 여건 등을 감안하
여 실제 조달하는 금리를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2 제
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
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
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
우, 보상자금 선투입 사업에 대
한 선투입 규모, 상환기간, 연도
별 상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453